

「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8월 29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9월 7일

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미래도시기획실장 방 주 문

나. 제안이유

- 구미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전환 초기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출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출자 개요

- 출자기관: 구미도시공사
- 출자내용: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
- 출자금액: 20억원(전액 시비)
- 출자시기: 2023년 12월
- 출자금용도: 구미도시공사 운영비(인건비, 운영비, 타당성 용역비 등)

○ 출자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

○ 출자의 필요성

-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 대행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형 구조의 공사·공단 혼합형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현안에 탄력적인 대응 필요
- 또한 도시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공익 실현 가능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

○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편성

○ 기 타: 출자금 세부내역(안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출자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사 설립으로 신규사업 진출 근거 마련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및 관내 도시 개발사업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의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공사 전환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